

2027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

(재)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무기체계 부품 생산기업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설비 고도화 등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9월 7일
(재)충남경제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(사업목적) K-방산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중소기업의 부품 납품 물량에 대한 생산능력 향상

(지원대상) 천안, 공주, 아산, 당진(본사 또는 공장) 방산 중소기업*으로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('22년 이후 \$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) 체계기업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

* 중소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(지원규모) 5개사 ※천안(1개사), 공주(2개사), 아산(1개사), 당진(1개사)

○ 생산설비 고도화 및 생산 최적화 지원(기업당 최대 90백만원 이내)

※ 공급가액의 최대 50%(부가세 제외)

※ 2027년 국비 예산 확정에 따라 지원 규모(수혜기업 수, 지원금)가 변경될 수 있음

(지원기간) 2027. 1. ~ 2027. 11. ※ 협약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. 신청자격

(자격요건) 접수 마감일 기준 ① ~ ④ 모두 충족

구 분	세부기준
① 소 재 지	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중소기업
② 규 모	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(중견기업, 대기업 해당 없음)
③ 분 야	2022년 이후 기준 \$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
④ 업 종	방산분야 생산설비 고도화 및 생산 최적화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

(신청 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 기준

구 분	신청 제외기준
채무불이행	- 기업의 부도
	-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
	-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
	- 파산,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기업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)
기타사항	-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접수 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
	- 보조금(간접보조금 포함)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
	- 동일 신청과제(사업내용)로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, 또는 과제의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	-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
3. 신청절차 및 내용

(신청방법)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(www.cnspp.or.kr) 접수

※ 회원가입 후 '2027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' 선택

(추진일정)

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6. 9. 7. ~ 9. 21.	▶	현장 실태조사 2026. 9. 28. ~ 10. 2.	▶	서류 검토 및 선정평가 2026. 10. 12. ~ 10. 16.
			▶	
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027. 1. ~ 11.	▶	사업비 확정 통보 2026. 11.	▶	보조사업자 선정 2026. 10.

※ 추진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(지원내용) 기업당 최대 90백만원(공급가액의 최대 50%, 부가세 제외)

※ 기업부담금(현금) 50% 이상

지원항목	세부 지원내용
생산설비 고도화	- 자동화 설비 구축지원
	- 기존 생산설비 문제점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량 지원
	- 생산물량 향상에 따른 추가 생산설비 증설 지원
	-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※ 검사장비 S/W 업그레이드 포함
생산 최적화	-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(검사 및 시험 장비 포함)의 교체 지원
	-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 오버홀 비용지원

총사업비 안내

(단위: 천원)					
구분	지원금	기업 자부담 (기업 현금매칭)	합계	(지원금+자부담)의 부가세 (기업 현금매칭)	총합
	A	B	A+B	C	A+B+C
설비지원	90,000	90,000	180,000	18,000	198,000

• e나라도움 사용 안내: 기업자부담 및 부가세 등은 협약 즉시, 기업이 직접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전액 현금입금 후 장비 구매 진행

(지원제외 항목) 인건비, 경비성 비용(간접비, 여비 등)

※ 나라장터 수수료, 나라장터 규격심사/기술평가 등의 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

(지원방식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활용

○ 수혜기업은 민간보조사업자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

※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함

○ 수혜기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장비나 설비 구매·용역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

<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>

제21조(보조사업 관련 계약)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**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.** 다만,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,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
2.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

3.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

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.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국고보조금 민간보조사업자 안내

- 민간보조사업자의 의미 : e나라도움(<https://www.gosims.go.kr/>)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지니는 자

구분	내용	비고
핵심특성	- 보조금 교부(수령)후 보조목적에 따른 사업시행 -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및 보고 등 각종 의무 부담	
보조금법 적용 대상	- 예산계정신청(제4조), 보조금 교부신청(제16조), 보조사업 내용 변경 등 승인신청(제23조, 제24조), 정보공시(제26조의3), 보조사업 실행보고(제27조), 보조금의 반환(제31조), 별도계정의 설정 등(제34조), 중요재산 부기등기(제35조2)	- 정산대상(불인정/반납 대상) - 자부담 계좌 개설 (자부담, 부가세 등 기업 입금계좌)
e나라도움 시스템상의 역할	- 사업신청, 교부신청 및 재교부, 보조금 집행등록, 정산/실적보고, 반납처리 등	
e나라도움 시스템상의 관리범위	- 사업수행관리, 자격검증, 중복수급 등 각종 부정수급 검증 대상, 보조사업자 종합 DB로 보조사업수행이력관리	

4. 평가 방법 및 항목

(평가방법) 현장평가 / 발표평가

- (현장평가)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기업역량 등 확인
- (발표평가)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

(평가항목)

구분	세부평가항목	배점
기업 현황(40점)	2025년도 방산매출 비중	20점
	최근 3년간 생산량 증가율	20점
지원 적정성(40점)	수출 무기체계와의 정합성	10점
	지원신청 설비의 적정성	10점
	지원 후 예상 생산량 증가의 적정성	10점
	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	10점
사업성/기대효과(20점)	경제적 파급효과	10점
	방위산업 파급효과	10점
합계		100점
충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가점 부여		3점

5. 접수방법 및 서류

(접수기간) 2026. 9. 7.(월) ~ 9. 21.(월), 18:00까지

(접수방법) 온라인 접수(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

○ (온라인 접수)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(www.cnsp.or.kr)

※ 회원가입 후 사업공고>남부지소, '2027년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' 선택

(신청서류)

NO	제출서류 목록	비고
필 수	01. [양식.1] 수혜기업 자가진단표	
	02. [양식.2]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	접수 후 변경불가
	03. [양식.3] 사업계획서	접수 후 변경불가
	04. [붙임1]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대표자, 담당자)	
	05. 평가결과/e나라도움 사용 수락 약약서	
	06.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등	사본가능 (원본대조필 날인)
	07. '23~'25(3년)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	
	08. (최근연도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※ 홈텍스 발급가능)	최근결산연도 제출확인용
	09. (최근연도) 4대보험 가입자 명부	
	10.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 본)	
	11. 최근 3년간 무기체계업체와의 계약, 납품 실적 등 ※ 수출무기체계(22년 이후 \$50백만 이상 수주) 계약 확인 서류 포함	
해당시	기업 소개자료, 특허 등 지식재산권,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등	사본가능 (원본대조필 날인)

○ 신청서식: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과 같이 첨부된 서식 사용

6. 유의사항 및 문의처

(안내 및 유의사항)

- (재)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접수 외에는 접수 불인정
-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인정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이용에 대한 절차, 일정 등은 수혜 기업 선정 후 상세 안내 예정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이용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진흥원에서 위원 POOL 제공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평가위원회 운영 시 진흥원 직원 배석 예정
- 선정업체 중 포기업체가 발생하거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 순위 업체에 기회 부여

(신청제외)

-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있는 경우
-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- 허위·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

(기타 유의사항)

- 필수서류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미제출된 신청기업은 공고 이후의 절차에 응할 수 없음(현장평가, 대면평가 참석 불가)
-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,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제작된 설비 등 자산은 충남지역(본사 또는 공장)에 배치하여 해당 부품 생산
- 선정된 기업은 지원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 기간을 가지며, 설비 등 자산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방위사업청장, 충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매각, 용도변경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

(문의처)

- (담당자)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(☎041-404-1380)
- (담당자)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(☎041-404-1382)